

#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규정

제정 2020.10.05.  
 개정 2022.02.21.  
 개정 2024.09.02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심화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 수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이 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학사행정 전반에 적용하되, 다른 상위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따라 학사업무를 처리한다.

**제3조(직무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신규인가 신청, 모집, 증원, 전환, 운영현황 변경신청, 운영평가 등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지원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  
 ② 센터장은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 
 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학사학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  
 ② 위원은 교수와 산업체 임직원을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 비율은 50% 이상으로 구성한다.  
 ③ 학사학위운영위원회는 학사학위대학운영위원회와 학사학위학과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,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학사학위대학운영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에서 운영</li> <li>-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위촉</li> <li>- 입학 전형계획 수립, 자체평가, 학사학위 전공심화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</li> </ul>
학사학위학과운영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과별 운영</li> <li>- 학과의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촉</li> <li>- 학생 선발, 학점인정, 교육과정 편성, 교육수요자 의견수렴, 교육과정 운영, 성적 및 졸업사정, 교육과정 운영 점검, 교육의 질 관리, 전공심화 학과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</li> </ul>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 
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산업체 임직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7조(부칙)

1. 본 규정은 202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24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